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동주 의원)

의안 번호	15-27
----------	-------

발의연월일 : 2015. 3. 24.

발의자 : 이동주, 강희향, 문정애, 백남환,
송병길, 유호렬,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한일용, 허정행
의원(12명)

1. 제안이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洞) 자치회관 대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포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洞)자치회관을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함.(안 제3조제5호 단서 신설)

3. 관계법규

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의정활동 보고)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3. 24 ~ 2015. 3. 28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원칙)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u><단서 신설></u></p>	<p>제3조(원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u></p>

관계 법규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첨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

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0.10.31 조례 제470호, 2014.11.20 조례 제980호 일부개정]

제3조(원칙) 제2장에서 정한 자치회관과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